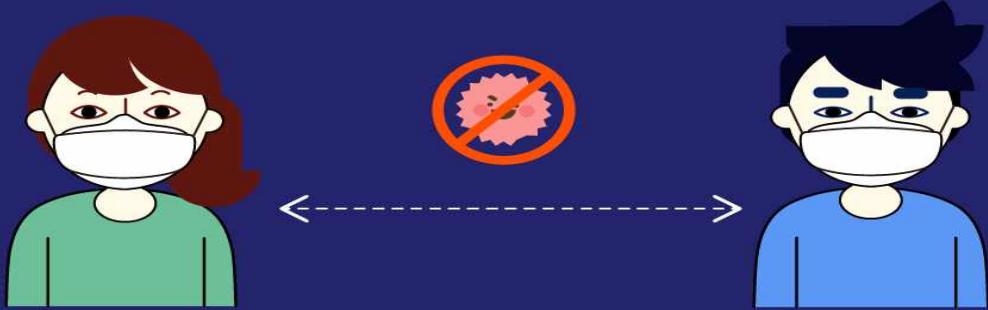


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방역수칙

<연말연시 특별방역 + 거리 두기 2.5단계>

~ 1월 17일(일)까지 적용



외출·모임을 취소하고 이동을 자제해 주세요



2021.1.6. 기준 2/10

파란색 글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('20.12.24~'21.1.3)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
빨간색 글자는 추가로 강화·조정되는 조치

< 모임·행사 >

1. 사적 모임

✓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

(제외)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
아동, 노인,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

4명까지만 가능

*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

2. 기타 모임·행사

✓ 결혼식·장례식·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

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,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



50명 미만

✓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

시설 면적 16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50인 기준 미적용

< 다중이용시설 >

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

공통수칙

- ✓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
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



1. 유흥시설 5종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

- ✓ 집합금지

2.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

- ✓ 집합금지

3. 노래연습장

- ✓ 집합금지



4. 실내 스탠딩공연장

- ✓ 집합금지

5. 식당

2021.1.6. 기준 4/10

- ✓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
- 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좌석·테이블 한 칸 띄우기,
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m²이상)
- ✓ 뷔페의 경우,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
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
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- ✓ 브런치카페·베이커리카페*·패스트푸드점에서
커피·음료·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·배달만 허용
- *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(파스타, 오믈렛 등)을 판매하는 곳

6. 카페(무인카페 포함)

- ✓ 영업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

7. 홀덤펍

- ✓ 집합금지



8. 실내체육시설

- ✓ 집합금지



9. 야외 스크린 골프장(밀폐형)

- ✓ 집합금지

10.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(스키장, 빙상장, 눈썰매장)

- ✓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- ✓ 수용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
- ✓ 장비대여,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(식당·카페·오락실 등) 집합금지
- ✓ 타 지역-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
- ✓ 장비·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
- ✓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
- ✓ 직원·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

11. 놀이공원·워터파크

- ✓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- ✓ 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



12. 학원·교습소(독서실 제외)

- ✓ 원칙적으로 집합금지,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

① 동시간대 교습인원*이 9인 이하인 학원·교습소(숙박시설 운영 금지)

*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

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

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
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

→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

- ✓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- ✓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- ✓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준수
- ✓ 노래, 관악기 교습 금지



13. 독서실·스터디카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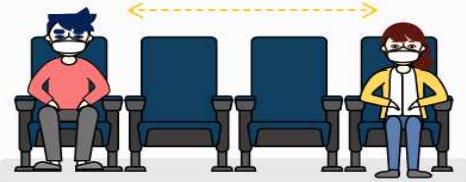
- ✓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- ✓ 음식 섭취 금지(찬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- ✓ 좌석 한 칸 띄우기(찬막이 있는 경우 제외)
- ✓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

14. 영화관

- ✓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- ✓ 좌석 한 칸 띄우기
- ✓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15. 공연장

- ✓ 좌석 두 칸 띄우기
- ✓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

16. PC방

- ✓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- ✓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- ✓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17. 오락실·멀티방 등

- ✓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- ✓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- ✓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



18. 목욕장업

- ✓ 시설 면적 16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
- ✓ 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운영 금지
- ✓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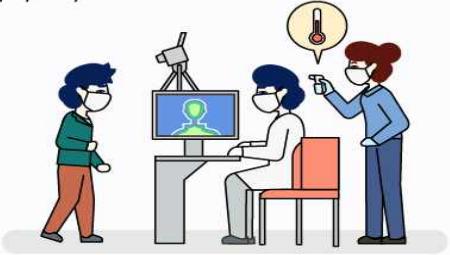


19. 이·미용업

- ✓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- ✓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
20. 백화점·대형마트

- ✓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
- ✓ 시식·시음 서비스 운영 금지
- ✓ 집객행사 금지
- ✓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·의자) 이용 금지
- ✓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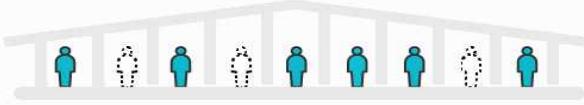
21. 백화점·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(300m² 이상)

- ✓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- ✓ 시식 코너 운영 중단

< 기타 다중이용시설 >

1. 숙박시설

- ✓ 객실 수의 2/3 이내로 예약 제한
- ✓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
- ✓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
- ✓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
- ✓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



2. 파티룸

- ✓ 집합금지

5. 아파트 내 편의시설

- ✓ 운영 중단

3. 주민센터

- ✓ 문화·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

6. 평생교육기관(문화센터 등)

- ✓ 노래·관악기 교습 금지

4. 사회복지이용시설

- ✓ 이용인원 30% 이하로 제한(최대 5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,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

< 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 >

1. 마스크 착용 의무화

- ✓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
 - * 위반 시 과태료 부과



2. 교통시설 이용

- ✓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,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
- ✓ 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, KTX, 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(항공기 제외)

3. 직장근무

- ✓ 인원의 1/3 이상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 재택근무 등 권고
- ✓ 고위험사업장(콜센터·유통물류센터) 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,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



4. 종교활동

- ✓ 비대면 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실시(참여인원 20명 이내)
- ✓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